

참고 2 세부정산기준(안)

가. 기본제출서류

- 기본제출서류 : 인증서 사본, 정산신청서 및 세부내역서(지정양식), 업체통장사본
- 대행사를 통해 인증 취득 시 대행계약서, 세금계산서, 비용 납입(업체→대행사) 완료 영수증(은행발행 계좌이체증 등) 제출

나. 인증취득비용 정산 세부항목 기준

구분	세부항목	기준	제출증빙
인증 취득 비용	심사비 및 등록비	○ 심사원의 인건비, 인증기관의 행정처리비용 등이 포함된 비용	①인증기관 발급 인보이스 및 영수증 (은행 발행 계좌이체증 등) * 인증기관 → 업체 발행 인보이스,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 사본
	실사비 (항공료)	○ 해외에 위치한 인증기관 실사단의 국제선 왕복 항공료 (economy) - 최대 2인	①항공티켓 또는 e-ticket ②여행사 인보이스 및 영수증 (카드전표, 은행발행 계좌이체증 등) ③실사단의 한국체류 세부일정 * 실사단이 체류기간 중 타 업체 방문시 항공료를 전체 방문업체 수로 나누어 해당분만 지급 (1회 방한 다수 국내업체 실사 시)
	제품 시험비	○ 인증 요구사항에 따른 제 품분석비 및 시료운송비 (운송비 16만원 한도)	①시험기관 발행 세금계산서 (인보이스, 영수증, 카드전표, 은행발행 계좌이체증 등) ②시험기관 발행 제품시험결과서 ③운송사 발행 세금계산서, 지출증빙사본 (인보이스 및 영수증 등) * 인증 등록 요구사항에 따라 인증기관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제품분석비만 정산 (필요시 증명자료 제출)
대행 비용	통역 및 서류번역	○ 서류심사를 위한 서류번역 및 현장심사를 위한 통역비	①통번역사 프로필 ②통번역비용 지출증빙 (거래명세서, 영수증, 카드전표, 은행발행 계좌이체증 등) ③통역결과보고서(현장사진 등) ④번역결과물(원문 및 번역본) * 매 건당 증빙자료 필수 제출 * 컨설팅비와 중복신청 불가
	컨설팅비	○ 인증 취득을 위해 컨설팅 기관에 의뢰시 발생하는 컨설팅비용	①컨설팅보고서 ②컨설팅기관에서 발급한 지출증빙 (인보이스 및 지출증빙 사본) * 인증별 400만원 한도
	교육비	○ 해당 인증취득을 위한 교육에 한해 인증별 최대 2인 지원	①교육결과보고서(사진포함) ②교육기관 이수증 ③지출증빙 사본 * 집합교육은 참석인원수/교육비용*2인으로 산출로 참석자 명단제출 * 컨설팅업체에서 실시한 교육은 신청 불가

구분	세부항목	기준	제출증빙
대행 비용	예비 심사비	○ 인증기관에서 수행한 예비 심사 비용 (심사 조건에 적합한 지를 본 심사에 앞서 심사하는 것)	①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거래명세서 및 지출 증빙 사본 * 예비심사 : 심사조건에 적합한 지를 본심사에 앞서 심사하는 것 * 컨설팅기관 없이 자체 인증 취득 업체에 한함 * 컨설팅비와 중복신청 불가
	인증대행 수수료	○ 인증대행(인증신청 및 접수 등)을 위한 수수료	① 인증대행기관에서 발행한 대행내역서 ② 인보이스 및 지출증빙 사본 * 인증별 200만원 한도 * <u>해외에 소재한 인증·등록기관 관련 직접적 신청이 불가한 경우 적용</u>
정산 불가 항목	○ 시설설치비, 물품구입비, 지원업체의 해외현지 방문비용, 식비, 유류비, 선물비, 출장비(운영비), 렌터카 비용 등 인증 취득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거나, 세부정산기준 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은 정산 불가 ○ 실제 비용 지출을 증명할 적합한 증빙이 없는 항목 정산 불가 ○ 국내 발행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항목은 정산 불가 ○ <u>한국식품연구원에서 수행한 하람·동물성성분 분석건 신청 불가</u>		
기타 사항	○ 대행비는 인정된 총 소요비용의 50% 한도 내 정산 ○ aT 지역본부는 비용 집행 검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항목은 정산 불가 ○ 영양성분검사, 제품시험분석비 등은 인증·등록에 <u>필수요건인 경우</u> 에 한해 지원 (필수요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) ○ 환율은 실제 비용 지출(송금) 당시 적용된 환율로 인정 ○ 정산금 지급 시 업체 법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개인사업자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개인계좌로 송금해야할 경우 담당자 승인절차 필요		

[참고] 지원업체 정산 승인금액 산출 절차

- ① 인증취득비용 및 대행비 확인 : 인증비(6,300천원)/대행비(4,800천원)
 - ② 대행비 한도 계산('총 소요비용'의 50%) : [11,100천원 × 50% = 5,550천원]
 - ③ '최종 정산승인금액(인증취득비용 + 50% 한도 적용된 대행비)' 산출
 - ④ '최종 정산승인금액'의 70%를 지원업체에 지급(연간지원 한도내)
- ☞ 정산승인금액 = 소요비용[6,300천원(a) + 4,800천원(b)] x 70% = 7,770천원
- * 정산 지급액은 신청 시 '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'에 입력한 비용을 기준으로 산출된 배
정예산한도를 넘을 수 없음

< 항목별 소요비용 예시 >

구 분	정산세부항목	소요비용(원)	승인대상 금액
인증비 (A)	심사/등록비	5,000,000	승인대상 인증비(a) 6,300,000원
	실사비	800,000	
	제품분석비	500,000	
	소계	6,300,000	
대행비 (B)	통역/서류번역	800,000	승인대상 대행비(b) 4,800,000원 * 컨설팅비 400만원 정산 신청한도 적용 * 통역 및 서류번역비와 컨설팅비 중복불가
	컨설팅비	5,000,000	
	교육비	800,000	
	소계	6,600,000	
Total (C)= (A) + (B)		12,900,000	(6,300천원 + 4,800천원)x70% = 7,770천원